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 선고 2019가합545268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윤석, 조경윤

피 고 1. 주식회사 A

2. B

변론 종결 2020. 4. 2.

판결 선고 2020. 7. 2.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5,779,746원 및 그중 1,087,565,310원에 대하여는 2019. 6. 20.부터, 924,957,123원에 대하여는 2019. 6. 28.부터 각 2019. 7. 11.까지는 연 10%, 2019.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과 대출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이하 각 약정을 순번에 따라 '제1 내지 8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하고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약정일	보증기한	보증금액
1	2013. 1. 15.	2014. 1. 15(2019. 4. 30.로 변경)	900,000,000원
2	2018. 5. 11.	2019. 5. 10.	214,200,000원
3	2018. 5. 11.	2019. 5. 10.	144,000,000원
4	2018. 5. 11.	2019. 5. 10.	117,000,000원
5	2018. 6. 20.	2019. 6. 20.	378,000,000원
6	2018. 7. 16.	2019. 7. 16.	111,600,000원
7	2018. 7. 16.	2019. 7. 16.	47,700,000원
8	2018. 10. 11.	2019. 7. 16.	55,800,000원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는, 피고 A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제10조 제1항 제1호)과 이에 대하여 이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손해금율(2012. 12. 1.부터 2016.1. 31.까지는 연 12%, 2016. 2. 1. 이후부터는 연 1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제10조 제1항 제2호),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다음 날부터 보증소멸일전날까지 보증료율에 연 0.5%를 가산한

요율로 계산한 추가보증료(제10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3항) 및 권리의 실행 또는 보전을 위한 법적절차비용(제10조 제2항 제2호)등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피고 A의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등에는 통지나 최고 없이 사전에 구상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제5조 제1항 제10호 등).

(3)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피고 A는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C은행으로부터 1,100,000,000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1,187,000,000원(238,000,000원 + 160,000,000원 + 130,000,000원 + 420,000,000원 + 124,000,000원 + 53,000,000원 + 62,000,000원)의 각 대출을 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 발생과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는 2019. 1.경부터 자금사정의 악화로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였고, 이에 따라 2019. 2. 및 3.경 각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9. 6. 20. 제2 내지 8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합계 1,087,841,100원을, 2019. 6. 28.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은행에 924,957,123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9. 6. 20. 제6 내지 8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한 대위변제금 중 합계 275,790원을 회수하였고, 일부회수에 따라 2019. 6. 20. 발생한 확정지연손해금은 지연손해금율 10%로 계산하여 합계 74원이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총 추가보증료는 4,096,880원이고, 원고는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으로 총 9,160,359원의 법적절차비용을 부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5,779,746원(=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924,957,123원 + 제2 내지 8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중 회수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1,087,565,310원(= 1,087,841,100원 - 275,790원) + 일부 회수에 따른 확정지연손해금 74원 + 추가보증료 4,096,880원 + 법적절차비용 9,160,359원) 및 그중

1,087,565,310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9. 6. 20.부터, 924,957,123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9. 6. 2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최후송달일인 2019. 7. 11.까지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연 10%, 2019.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임기환, 판사 김희영, 판사 김종범